아르피나 영업관리 운영지침

제정 2022.06.16. 개정 2023.03.22. 개정 2023.07.14. 개정 2024.07.08. 개정 2024.11.26. 개정 2025.04.25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부산도시공사(이하"공사"라 한다)가 운영하는 아르피나 사업(이하"아르피나"라 한다)의 영업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업 무수행 및 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지침은 아르피나에 적용한다.
 - ② 이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 규정 및 내규에 따른다.

제2장 예약 운영기준

- 제3조(목적) 이 기준은 아르피나의 숙박 및 식음·연회장 예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4조(예약금) ① 예약금은 거래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② 예약금은 계좌입금 또는 카드, 현금수납으로 하며, 현금수납 시 현금영수증을 발부한다.
- 제5조(예약의 취소) ① 숙박 예약은 [별표 1] 숙박약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, 고객 사정으로 인해 체크인 후 조기 퇴실의 경우 이를 사유로 환불이나이용요금의 할인을 요구할 수 없다.
 - ② 천재지변(지진, 홍수, 태풍 등)으로 숙박 및 식음·연회장 이용이 불가할

- 경우 고객의 예약취소 또는 환불요청 시 서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 이 경우 위약금은 받지 않는다.
- ③ 예약자가 사전 고지 없이 노쇼(No-Show)할 경우 예약을 당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. 다만, 미고지의 사유가 예약자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약취소시의 위약금) 예약금을 납입한 예약자가 예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했을 경우에 예약금은 다음과 같이 아르피나에 귀속시킨다.
 - 1. 사전 통보 없이 식음·연회장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.,
 - 2. 식음·연회장 예약 취소를 사전 통보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.
 - 3. 숙박예약 취소의 경우 [별표 1]의 숙박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청구사항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장 이용요금 및 할인기준

- 제7조(목적) 이 기준은 아르피나 운영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내·외부 고객(개인, 단체, 업무협약 체결기관 등)을 포함하는 프로모션 등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할인 등에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8조(적용범위)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용요금은 객실, 연회장, 청소년 수련활동 및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9조(적용원칙) ① 이용요금은 각 영업장별로 [별표 2] 내지 [별표 6]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따른다.
 - ② 할인기준은 각 영업장별로 [별표 2] 내지 [별표 6]에서 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영업, 마케팅 활동 등 아르피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,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의 이용요금은 아르피나를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물의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. 단, 이용요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장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- ④ 두 가지 이상의 할인적용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유리한 한가지의 할인만을 적용한다. 단, 단체고객은 최초 약정된 판매가격 보다 유리한 개인 할인종류가 있더라도 약정된 판매가격을 달리하여 추가적인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.

제4장 선수금 관리기준

- 제10조(목적) 이 기준은 아르피나의 선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절차 및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11조(범위)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연회행사를 전제로 하여 받는 선수금
 - ② 식사나 음료의 판매를 전제로 하여 받는 선수금
 - ③ 기타 영업장 및 객실 판매를 전제로 하여 받는 계약금 또는 예약금
- 제12조(입금) ① 영업현장에서 접수한 선수금은 예약금계좌 입금내역 및 카드 전표를 금고에 수납한다.
 - ②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원화로 환전하여 제1항의 절차와 같이 입금한다.
 - ③ 영업부 예약담당자는 단체행사 또는 객실예약 선수금 발생 시 통합관리시스템에 선수금액, 선수금 발생일자, 결제방식(카드, 현금, 계좌입금)등을 입력처리 하여야 한다.
 - ④ 고객으로부터 받는 선수금은 카드, 현금,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3조(관리) ① 선수금관리 담당자는 담당부서장의 결재 없이 접수된 선수금을 독단적으로 반환할 수 없다.
 - ② 선수금의 접수와 대체, 반환 등의 변동 상황 발생 시 당일 전산입력처리 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반환) 거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고 수납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받아 반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 - 1. 반환청구시 : 선수금 반환시 관련 근거 문서 및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 - 2. 수령자 : 반환되는 선수금의 수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자가 직접 서명 후 절차에 의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반환금지 등) ① 고객으로부터 예약 시 수납한 선수금은 고객이 행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반환금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고객이 행사당일 해약을 할 경우 준비된 음식료와 정해진 대실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선수금 징수한도) ① 선수금은 예상매출 총액의 20% 범위내에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국·공업체, 관공서, (초·중·고·대)학교 등 신뢰할 수 있고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(업체)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선수금의 면제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예상 매출총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 선수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5장 채권관리기준

- 제17조(목적) 이 기준은 아르피나의 외상거래 절차와 적용기준 및 업무상의 책임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아르피나 대손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18조(적용범위) 다른 법령 및 공사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채권관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9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외상"이라 함은 아르피나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2."채권"이라 함은 아르피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등으로 공사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.
- 3. "미납채권"이라 함은 행사종료 후 입금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.
- 4."악성채권"이라 함은 이미 실제상 대손이 된 채권 또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대손이 예상되는 외상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써 대금지불약정서상의 지불기한에서 3개월이 경과된 채권은 악성채권으로 본다.
- 제20조(채권거래의 인적범위) 개인 고객과의 채권거래(후불)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음 각호의 상대방과의 채권거래만 가능하다.
 - 1. 아르피나와 가맹 계약된 신용카드 소지자
 - 2. 국내외 여행알선 업체
 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공공단체
 - 4. 금융기관 및 주요경제단체
 - 5. 정당단체
 - 6. 청소년관련단체
 - 7. 기타 아르피나가 채권거래대상으로 인정하는 단체
- 제21조(외상거래 허용) ① 외상거래는 원칙적으로 허가 할 수 없으나, 제20조의 인적범위내의 상대방과 행사 예약 또는 행사대금수납 시 담당부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.
 -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외상 거래시 [별지 제1호 서식]의 대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한다. 단, 외상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[별지 제2호 서식]의 외상승인서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 시행한다.
 - ③ 후불기한(지불예정일)은 행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1개월을 넘어서는 경우나 금액이 많아 분납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 계약서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
 - ④ 거래업체의 납부기일 연장 요청 시 1개월 단위로 2회에 한정하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며, 후불 기간은 아르피나사업부 위임전결내규 중 예산 및 회계의 계약기간 변경 품의 기준에 따라 전결

구분에 의해 결재를 득한 후 연장 승인할 수 있다.

- 제22조(계속 거래처의 외상) ① 영업(마케팅)담당자는 여행사 등의 계속 거래처 (1개월 이상 연속 이용 등)에 대한 외상제공에는 외상 한도금액, 지불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(장기외상거래 계약)을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, 외상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② 외상거래 계약체결 시 외상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사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외상잔고 최고 한도액에 상응하는 채권담보(보증보험증권 등) 를 사전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대금의 회수) 담당자는 대금지불약정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불조건 을 확인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.
- 제24조(독촉장 발송 및 강제회수) ① 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때 담당자는 3회 이상의 독촉장(내용증명)을 발송해야 한다. 단, 독촉장 발송 중 상환계획을 접수하고 그 중 일부가 상환되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독촉을 중지할 수 있다.
 - ② 독촉장 3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아니하는 악성채권은 지체 없이 공사 소송업무규정의 절차로 진행한다.
- 제25조(악성채권의 처리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악성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.
 - 1. 채무자의 사망, 행방불명 등 채무자의 신변상 이유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
 - 2. 채무자의 자산, 변제능력 불소지 등 채무자의 경제상 사유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
 - 3. 채권회수 비용과 채권액의 비교 등으로 대금회수의 포기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
 - 4. 기타 사유로 대금회수의 포기가 불가피한 경우
 - ② 채권을 포기할 경우는 채권이 악성으로 된 원인을 담당 본부장에게 분석하여 보고하며, 채권포기금액이 과다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장 열쇠관리기준

- 제26조(목적) 이 기준은 아르피나의 객실, 식음료, 스포츠 및 기타 부대시설의 열쇠(KEY, 이하"키"라고 한다)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안전·방범·화재예방·재산보호·비상시 신속한 조치 및 기밀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7조(용어정의) ① "관리부서"라 함은 키의 제작, 지급, 반환, 교체 시 키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② "사용부서"라 함은 키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③ "체인지키(CK: Change Key)"라 함은 일정한 문 1개소만 열리는 키를 말한다.
 - ④ "마스터키(MK: Master Key)"라 함은 체인지키급 2개소 이상을 개폐할 수 있는 키를 말한다.
 - ⑤ "그랜드 마스터키(GMK: Grand Master Key)"라 함은 마스터키급 2개소이상을 개폐할 수 있는 키를 말한다.
- 제28조(구분) 아르피나에서 사용하는 모든 키는 그랜드 마스터키, 마스터키, 체인지키로 구분한다.
- 제29조(관리) 키의 전반적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.
- 제30조(제작 및 지급) ① 키는 [별지 제3호 서식]의 "열쇠 제작의뢰서"에 의해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② 키는 최소한의 부서 및 매니저 이상 개인에게 지급한다.
 - ③ 그랜드 마스터키는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④ 관리부서는 키 제작 및 지급에 따라 [별지 제4호 서식]의 "열쇠 불출관리 대장"에 변동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31조(키의 관리 및 사용책임) ① 키의 관리 및 사용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객실, 식음료영업장, 스포츠영업장, 주방 및 해당부속실: 선임 매니저

- 2. 경비관련 및 사무실: 객실 근무자 및 당직 매니저
- 3. 시설 및 청소지역(각층 전기, 기계, 공조실, 옥상, 비상문 등): 시설관리 부서
- ② 키의 사용부서 및 개인은 [별지 제4호 서식]의 "열쇠 불출관리대장"을 작성하여야 하며, 관리부서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.
- ③ 마스터키급 이상 키는 담당부서장의 통제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키를 야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근무자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야간순찰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야간 객실근무자는 경비에게 입회하 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야간 객실근무자는 반드시 열쇠 반환까지 책임지고 회 수·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32조(보관) ① 마스터키급이상 키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영업장 및 세미나실, 사무실 및 부대시설 키는 프론트데스크에 보관하며 프론트데스크 근무자는 [별지 제4호 서식]의 "열쇠 불출관리대장"을 비치하여 키 보관 및 지급 시 해당자가 관리대장에 서명토록하며, 지급시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인수인계) ① 부서에 지급된 키는 전보 시 반드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 ② 개인에게 지급된 키는 퇴직, 전보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선임 매니저가 회수 후 열쇠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점검) 키 관리 및 사용부서는 분기별 1회 지급된 키의 관리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.
- 제35조(도난예방 등) 지급된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키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때 키 관리부서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6조(복제책임 등) 관리부서는 모든 키의 복제와 수리를 담당하고 키 불출관리대장의 현황유지와 키복제 관련 및 자재관리업무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- 제37조(무단복제 및 소지금지) ① 아르피나에서 사용하는 모든 키를 무단으로

복제하여 소지하거나 허가 없이 복제 금한다.

- ② 관리부서는 마스터키급 이상 키의 관리자에게 무단복제금지를 위하여 [별지 제5호 서식]에 의한 "열쇠 무단복제금지 서약서"를 작성·제출하게 하고이를 관리한다.
- 제38조(기타)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기존 잠금장치가 교체되거나 신규로 추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열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열쇠관리부서는 아르피나 키 시스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9조(각종 키 관리 유의사항) 객실 및 부대 업장의 모든 키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키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.
 - 1. 프론트
 - 가. 객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손님에게는 예비키를 불출할 수 없다.
 - 나. 객실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키를 불출할 수 없다.
 - 다. 고객이 키를 분실하여 다른 키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키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객실 도어에 발급받은 키를 등록토록하여 분실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2. 룸메이드. 하우스키핑

객실 등에서 습득한 키는 프론트 데스크에 반환하여야 한다.

3. 수납워

고객 퇴실 시 객실 키로 객실번호를 확인하고 회수하여 객실 키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.

- 4. 야간(당직)근무자 및 경비
- 가. 시설 내·외부 순찰 중 부주의하게 시설주변에 떨어진 키가 없는지 항상 주의하고 발견된 키는 프론트에 반환한다.
- 나. 고객이 아닌 사람이 객실 키를 소지한 것을 발견한 경우 확인한 후 회수하여야 한다.

제7장 시설이용권(쿠폰) 관리기준

제40조(목적) 이 지침은 아르피나의 각종 유·무료 시설이용권(할인권 제외)에 관한

관리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- 제41조(정의) ① "무료이용권"은 1인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말한다.
 - ② "할인권"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약정된 비율만큼 할인해 주는 쿠폰을 말한다.
 - ③ "수요부서"는 쿠폰 관리부서에서 쿠폰을 수령해 가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42조(적정재고의 유지) 수요부서에서는 각종 이용권의 수요량 및 사용량을 미리 파악하여 적정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43조(이용권의 제작) 수요부서는 신규 이용권의 제작, 이용권 도안의 변경 등을 위한 제작 인쇄 요구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- 제44조(이용권의 지급신청) 무료이용권 수요부서 담당자는 쿠폰을 신청할 경우, 무료이용권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소관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[별지 제6 호 서식]을 첨부하여 관리부서로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45조(무료이용권의 사용) ① 무료이용권을 보유한 수요부서에서는 [별지 제7호 서식]에 의거 무료 이용권의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이용권 관리부서에서는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[별지 제6호 서식]의 신청서를 토대로 이용권의 종류별로 [별지 제7호 서식] 무료 이용권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6조(회수) ① 프론트담당자는 고객이 제출한 이용권에 대하여 "사용처리"를 즉시 실행하여 도난, 분실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.
 - ② 프론트담당자는 "사용처리"된 이용권은 현금 입금 시 함께 불입한다.
- 제47조(보관 및 폐기) 쿠폰 관리부서는 회수한 이용권을 소각, 천공, 문서파쇄기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

제8장 습득물 처리기준

- 제48조(목적) 이 기준은 아르피나 내에서 습득한 물품의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처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49조(습득물의 정의) "습득물"이라 함은 고객과 직원을 막론하고 타인이 유실하여 습득한 물건을 말한다.
- 제50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아르피나 내에서 습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습득물에 적용된다.
- 제51조(신고의무) 직원은 아르피나 내에서 유실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영업장 프로트에 신고하여야한다.
- 제52조(습득물의 취급) ① 습득물의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습득물을 확인 후 [별지 제8호 서식]의 습득물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보관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 - ② 습득물관리대장은 영업장 프론트에서 관리한다.
- 제53조(특수물건의 취급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습득신고를 받았을 경우 영업장 프론트 근무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계하여야 한다.
 - 1. 화재, 폭발 등의 위험한 물품 및 고객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
 - 2. 불순자 또는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
 - 3. 법규에 의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 및 기타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물건
- 제54조(습득물의 보관) ① 습득물은 도난, 분실,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창 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보관된 습득물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습득물관리대장에 의거 현물을 확인하고 습득물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.
 - ③ 습득물이 보관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제55조(습득물의 보관기간 및 신고) ① 습득물의 보관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유실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 습득물이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인계한다.
 - ③ 보관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은 소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연장 보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처리 할 수 있다.
- 제56조(반환요령) ① 보관물품 중 유실자의 성명이나 주소지(연락처)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유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습득물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유실자 본인 여부 및 정당한 청구권 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되 반드시 수령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.
- 제57조(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처리) ① 관할경찰서에 인계된 물건이 법정기간을 경과 하여도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습득물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반환청구를 하여 그 소유권이 아르피나에 귀속되면 소관본부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한다.
 - ② 일정기간(6개월 이상) 자체 연장 보관된 찾아가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소관본부장의 결재를 통하여 폐기하거나 사회공헌부서에 기부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2. 6. 16 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3. 3. 23 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3. 7. 14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4. 7. 15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5. 1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대금지불약정서

	대 금 지 불 약 정 서					
부산도시공시	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귀하					
행사명(내용)):				법인	명 칭:
행 사 일 자	:			이 용		대표자 : 성 명 :
이 용 장 소	:			자	개인	주민등록번호 :
	총	₩ :		주 3	<u></u> :	
이용금액	미납역	북 :		전화번호	Σ:	
판촉담당 :			(인)	휴 대 폰 :		
지불방법 :				지불예정일 :		
후불사유 :						
본인()은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와 거래로 발생한 미납금 (원)을 년 월 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.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서 이 서약을 하고,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민·형사상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				할 것을 확약합니다. 않을 경우 귀사의		
			년	월 일	<u>]</u>	
서	약 인	성 주민등록 주			(인)	

[별지 제2호 서식] 외상승인서

결	담당	사업부장	담당 부서장
재			

협조(파트장) :

외 상 승 인 서

이용객명 : _____

이용장소 : _____

이용날짜 : _____

ما دا ما حال	회 사 명:
	담 당 자:
외상의뢰자	주 소:
	전화번호 :
	지불예정일 :
지 불	지불방법 :
	지불책임자 :
행사담당	자: (서명)
비고	

[별표 1] 숙박약관

숙 박 약 관

- 제1조(약관의 적용) ①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(이하 "아르피나"라 한다)가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.
 - ② 아르피나는 약관의 취지,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2조(숙박접수의 거절) 아르피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
 - 2. 만실 또는 객실내부 고장 및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
 - 3. 숙박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- 4. 숙박 대상자가 감염병(전염병)자로 명백히 인정 확인될 때
 - 5.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고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을 때
 - 6. 애완용 동물 또는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7. 불법 무기 휴대자
 - 8.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- 9. 주취(난동)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 10. 근무자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폭언, 폭행을 가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
- 제3조(성명 등의 신고) 아르피나는 숙박예약을 신청하는 예약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다.
 - 1. 숙박자의 성명, 국적(외국인), 연락처 등
 - 2. 기타 아르피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제4조(객실예약기준) ① 개인(F.I.T)의 예약가능 기간은 예약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.
 - ② 온라인여행사(플랫폼)의 예약가능 기간은 예약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.
 - ③ 단체행사의 예약가능 기간은 예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.
- 제5조(예약금) ① 아르피나가 숙박예약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예약금의 불입을 확인한 경우에만 예약을 보증한다. 단,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이 예약을 보증한다.
 - ② 제1항의 예약금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한다. 단, 예약금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, 예약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제7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한다.
 - ③ 아르피나는 신용카드에 의한 예약 또는 예약 해제 시에는 접수번호, 접수일시, 접수자 성명, 위약금 내용을 예약자에게 알린다.
- 제6조(예약의 취소) ① 아르피나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
 - 2.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명시를 요구했음에도 기한까지 회답하지 않을 경우
 - 3. 제5조 제1항의 예약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기한까지 불입하지 않을 경우② 아르피나는 제1항에 의해 예약을 취소했을 시 이미 수납한 예약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.
- 제7조(위약금 청구) ① 아르피나는 예약신청자가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 이에 대한 위약금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.
 - 1. 일반 및 단체 숙박 예약자
 - 가. 비수기: 숙박일 2일 전까지만 취소·변경 가능, 숙박일 1일전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20%, 숙박 당일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100% 위약금 발생나. 성수기: 숙박일 4일전까지만 취소·변경 가능, 숙박일 3일전부터 1일전에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20%, 숙박 당일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100% 위약금 발생

- 2. 인터넷 여행사 예약자
 - 가. 비수기: 숙박일 4일 전까지만 취소·변경 가능, 숙박일 3일전부터 1일 전에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20%, 숙박 당일 취소·변경 시 객실료의 100% 위약금 발생 (인터넷 여행사별 적용일과 금액 상이함)
 - 나. 성수기: 숙박일 4일 전까지만 취소·변경 가능, 숙박일 3일 전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20%, 숙박일 2일 전부터 당일 취소·변경시 객실료의 100% 위약금 발생 (인터넷 여행사별 적용일과 금액 상이함)
- ② 제6조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및 예약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것이 기차, 항공기 등의 결항 또는 지연, 기타 예약자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시에는 제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는다.
- 제8조(등록) 숙박자는 도착 즉시 객실 프론트에서 등록카드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숙박요금 산정) ① 숙박료는 고객이 도착한 후로부터 출발할 때까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도착 시 등록카드에 기명한 시간에서 출발 시 객실 키를 회수한 시간까지며, 체크아웃 시간은 11:00를 기준으로 한다.
 - ② 퇴실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만실일 경우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.
 - ③ 퇴실시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.
 - 1. 15:00시까지 : 객실료의 50%
 - 2. 15:00시이후 : 객실료 전액
 - * 단, 입·퇴실 시간은 성수기 등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요금의 지불) ① 숙박자는 아르피나에서 지불요청이 있을 때는 통화, 신용카드나 쿠폰으로 프론트 직원에게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 - ② 숙박자가 등록을 필한 이후에는 임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.
- 제11조(객실출입카드 인수 및 반납) ① 숙박자는 등록할 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객실 출입카드를 인수하고 퇴실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② 숙박자는 투숙 중 객실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프론트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숙박자가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퇴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아르피나에 알리고 신속히 반납하여야 한다.
- * 단, 숙박자가 출입카드 분실 시 [금30,000원(금삼만원)] 요금을 부과한다.
- 제12조(숙박계속의 사절) 아르피나는 숙박자가 비록 투숙중일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계속 투숙을 거절할 수도 있다.
 - 1. 제2조 제3호에 해당될 경우
 - 2. 아르피나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 - 3. 예약 만실로 인한 판매 객실이 없는 경우
- 제13조(영업시간) 아르피나 부대시설의 영업시간은 별도 게시되어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제14조(시설물 파손 및 배상) 숙박자는 숙박기간 동안 시설물 및 객실 비품을 파손했을 경우 시설물 및 객실비품에 대해 파손 당사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[별표 2] 객실 요금 및 할인범위

객실 요금 및 할인범위

1. 정찰요금 / 부가가치세 포함

		-1-t-1-11	a 1 - 11 - 11		a 1 -b1 - 11		
Ŧ	간분	2인침대	3인침대	4인침대·온돌	6인침대	8인온돌	5인콘도
보유	P객실	18실	8실	38실 · 17실	9실	10실	10실
객실	실형태	(2인) 더블BED 1	` ' ` '		2층침대 3EA	온돌객실 1R 8인 침구	침대1R,온 돌 1R
	-0 "	싱글BED 1	0222	(온돌) 1Room 4인 침구	공동화장실,	 샤워실 이용	거실, 취사시설
비수	주중	55,000원	66,000원	77,000원	90,000원	120,000원	110,000원
기간	주말	99,000원	110,000원	121,000원	청소년실 요금 / 유스룸		165,000원
 성수	주중	110,000원	121,000원	132,000원	1인 15	5,000원	187,000원
기간	주말	143,000원	154,000원	165,000원	만 24세까지(대학생 포함)		220,000원
기타사항 ▷ (기타사항) 객실 기준 인원 초과시 인원(침구) 추가 불가							

※ 유스호스텔 회원(도미토리) : 청소년 11,000원 / 성인 20,000원

비수기 (주중) 일 ~ 목요일,

(주말) 금, 토, 공휴일 전일

성수기 (주중) 일 ~ 목요일,

(주말) 금, 토, 공휴일 전일 및 여름휴가 피크 시즌(별도공지), 불꽃축제일, 12월 31일

- 2. 할인범위 : 아래의 경우 10~30% 이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.
 -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
 - ② 영업 활성화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(10% 할인) 매출(세미나실 포함) 예상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단체 행사팀
 - (20% 할인) 매출(세미나실 포함) 예상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 행사팀
 - (30% 할인) 매출(세미나실 포함) 예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단체 행사팀
 - ③ 별도 계약체결 보고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 - 온라인 객실 총판 위탁대행사업자, 업무협약기관, PKG(패키지)상품 개발 등
 - ④ 우리 공사 임직원(본인) 등이 이용하는 경우 (1인 1일 1실에 한함)
 - (30% 할인) 우리 공사 임직원(본인)이 직접 결제 후 이용하는 경우
 - (30% 할인)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(본인)이이 직접 결제 후 이용하는 경우
 - ※ 단, 할인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행사를 유치하거나, 특별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경우 소관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[별표 3] 회의실(연회장) 요금 및 할인범위 <개정 2024.11.26.>

회의실(연회장) 요금 및 할인범위

1. 표준요금 / 부가가치세 포함

구 분		위치	정원인원	ユロ(コフ)	표준요금	
		TI ^I	'6편한편	규모(크기)	4시간 이내	9시간 기준
대호	티의실	2F	250명	542 m²(약165평)	1,386,000	1,980,000
	시 걸		100명	193 m²(약 59평)	693,000	990,000
중 회의실	클로버	8F	80명	178 ㎡(약 54평)	539,000	770,000
-1-1-2	자스민		50명	136 m²(약 41평)	462,000	660,000
	가람	1F	각 30명	각 94 m²(약 28평)	308,000	440,000
소	누리	1F	각 30명	각 94 m²(약 28평)	308,000	440,000
회의실	오 션	2F	20명	55 ㎡(약 17평)	154,000	220,000
	도 담	1F	10명	34 m²(약 10평)	77,000	110,000

- ※ 단, 4시간 이내의 이용 시간은 행사 전 준비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적용하며, 4시간 초과시 9시간 적용
- 2. 할인범위 : 아래의 경우 10~30% 이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.
 -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
 - ② 영업 활성화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객실과 회의실을 함게 이용하는 경우(9시간 기준요금 적용)
 - (10% 할인) 객실 10실 이상 이용하고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
 - (20% 할인) 객실 20실 이상 이용하고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
 - (30% 할인) 객실 30실 이상 이용하고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
 - ※ 단, 할인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행사를 유치하거나, 특별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경우 소관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[별표 4] 청소년 수련활동 요금 및 할인범위 <개정 2024.11.26.>

청소년 수련활동 요금 및 할인범위

1. 이용요금

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

(단위: 원)

구분	1일	1박2일	2박3일
금액(1인당)	13,000	40,000	77,000
인 원		최소 50명 이상	

^{*} 숙박비 포함 가격

2. 할인범위

· 청소년 수련활동(청소년 단체, 학교단체 등)의 객실이용 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도자(청소년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人)에게 무료객실 제공 가능

^{*} 식비 미포함 가격(식사는 임대사업장 별도 계약)

[별표 5] 스포츠센터 이용약관

스포츠센터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(이하"아르피나"라 한다)가 제 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아르피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.

제2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- 1. 이 약관의 내용은 아르피나의 안내 프런트에 게시하거나 회원가입 시 가입신 청서 확인 및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2. 아르피나는 필요할 경우 약관 및 회원가입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3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3조(회원가입)

- 1. 신규 및 재가입 신청 시 회원가입 신청서는 이용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2.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3. 회원가입 신청서 오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아르피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4.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.
- 5. 75세 이상, 개인 지병이 있는 사람이 신규회원가입 및 재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회원가입 스포츠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
 - 건강상태 확인서(병명, 복용 중인 약, 병원 진료 의사 소견 등 기재)

제4조(환불기준)

- 1. 환불은 본인 의사에 의해 가능하며, 직접 탈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2. 아르피나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탈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.
- 3. 환불금은 최초 납입한 요금에서 종목별 1개월 정상가격(월 30일 기준)을 적용, 이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한다.
- 4. 환불신청 시 계약자 명의의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5. 환불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(가족)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6. 환불금의 지급은 아르피나의 운영일과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제5조(시설운영 및 휴관) - 변경 전

- 1.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종목별 운영시간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아르피나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- 골프연습장 : 06:00 ~ 22:00
 - 수영장 : (평일) 07:00 ~ 21:00, (토요일·공휴일) 09:00 ~ 17:00
- 2. 정기휴관 일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종목별 휴관일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아르피나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- 골프연습장 : 매월 2번째 화요일과 추석, 설날 당일로 한다.
 - 수영장 : 매주 일요일과 추석 및 명절 연휴 3일(추석, 설날)로 한다.
- 3. 제2호의 정기휴관일 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등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만큼 골프연습장은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수영장의 경우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.(단,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한다.)

제6조(이용안내)

- 1. 회원은 1일 1회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, 추가 이용을 원할 시 프런트에 서 해당 시설 일일 이용료를 추가 결제하여야 하며,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.
 - 적발 시 일일 이용료의 10배 부과
 - 3회 이상 적발 시 탈회 조치 및 영구입장 금지
- 2. 회원증 무단 양도 및 타인 이용은 불가하며 적발 시 탈회 조치 또는 영구

입장 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

- 3. 회원증 분실 시 프런트에 방문하여 소정의 요금 결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- 4. 회원 기간 종료 후에는 회원증을 프런트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5. 탈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원칙적으로 휴회는 불가하며, 탈회 후 신규등록으로 가능하다.
 - 회원의 요청으로 탈회 후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, 탈회시 제4조(환불기준) 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한다.
 - 탈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부터 그 이후로 가능하며, 지난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.
- 6. 양도 양수
-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는 불가하며 개별 양도 양수 확인시 탈회처리 한다.
- 7. 회원 간의 분쟁
 - 회원 간의 부주의나 다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아르피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7조(이용제한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
- 1.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 오감을 느끼게 하는 회원
- 2. 기타 공공질서 파괴 및 문란행위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 오감을 느끼게 하는 회원
- 3. 이 약관을 위반하여 탈회 조치되었거나 영구입장 금지된 회원
- 4. 개인의 권리와 이득만을 위하여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회위

제8조(이용수칙)

1. 수영장

- 수영장 이용 중 본인 및 회원간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아르피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수질 보호를 위하여 수영장 이용전 반드시 샤워를 합니다.
- 입수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.
- 입수 시 수영복 및 수영모자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.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뛰는 행위 및 다이빙을 금지합니다.

- 수영레인 우측방향 으로 운동하시고 개인 속도에 맞는 레인을 이용합니다.
- 수영레인 횡단 및 레인을 잡거나 기대는 행동을 금지합니다.
- 호흡곤란 현기증 등 신체 이상 시 운동을 중지합니다.
- 심실질환 및 전염성 질환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수영장 내 배설, 방뇨 및 타액을 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아르피나 정규 수영지도자 이외 수영지도를 금지합니다.
- 심장관련질환, 고협압, 노약자, 허약체질자, 고령자 등 수영장 내 안전사고및 신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은 이용을 삼가해 주십시오.
- 회원카드, 락커 키, 귀중품 등 개인소지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안전요원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.

2. 골프연습장

- 1인 1타석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. (2인 이상 사용금지)
-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, 시설 이용 시 정숙하여 주십시오.
- 동반하신 분의 안전은 이용자의 책임이며, 5세이하 유아는 동반을 금지합니다.
- 타석 이외 장소에서의 스윙을 금지하며, 음주자는 출입이 불가합니다.
- 타석 출입 시에는 주변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
- 연습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골프연습장 소속 지도자 이외 골프 지도를 금지합니다.
- 장비 및 개인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,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바른 복장을 착용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.
-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, 운영수칙을 위반할 시 퇴장 및 탈회 조치됩니다.
- 회원카드, 락커 키, 귀중품 등 개인 소지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아래 사항 해당 경우 골프연습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기상청 발표 풍속 1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/s 이상 예상될 때 (단, 기상청 발표 풍속 기준은 해당지역(해운대구 우2동) 날씨 예보에 따른다.)
 - 나. 강풍주의보 또는 강풍경보 발효 시
 - 다. 강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 전이라도 사전 안전 점검, 시설물 정비 등의 사유 발생 시
 - 라. 기타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때

3. 퍼팅 연습장

- 골프회원, 일일이용객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사람 또는 차량 또는 기물을 향하여 스윙을 금지합니다.
- 골프공은 개인 공을 사용합니다.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동반을 금지합니다.
- 시설 이용 시 운동화 또는 골프화를 착용합니다.
- 퍼팅장 내에서는 어프로치샷을 금지합니다.
- 퍼팅장 내 일어나는 이용객 간의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4. 야외운동장(풋살장)

- 흡연, 음주 금지 및 반려(애완)동물을 입장을 금지합니다.
- 운동장(풋살장)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.
- 용도에 맞는 운동화(인조잔디 전용) 착용을 권장합니다.
- 이용 시간 준수 및 운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권장합니다.
- 시설물의 임의 이동·설치 및 파손(원상회복 및 변상책임)을 금지합니다.
- 사용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합니다.
- 시설물 사용 후 주변 환경을 정리합니다.
- 경기장 내·외부,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히 자체적으로 수거 처리합니다.
-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주의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(민·형사상 책임은 이용자 책임)
- 풋살장 사용시 순찰근무자가 예약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[별표 6]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및 할인범위

스포츠센터 이용요금 및 할인범위

1. 성인 이용요금

O 종목별 **1일** 요금표

(단위: 원)

골프역	견습장	수 영 장	수 영 장 야외운동장	
(70분)	(90분)	(1일입장)	1시간당	조명 1시간당
17,000	20,000	8,000	50,000	10,000 추가

○ 종목별 월 회원 이상 요금표

(단위: 원)

골프연습장		수영장	야외운동장(풋살장) / 1시간당		1시간당
1개월	3개월	1개월(강습)	3개월이상	6개월이상	1년이상
200,000	570,000	105,000	45,000	40,000	35,000

2. 청소년 이용 요금

O 종목별 1일 요금표

(단위: 원)

골프연습장	수 영 장		야외운동장(풋살장)	
초·중·고	초·중·고	유아	1시간당	수련활동시
12,000	6,000	4,500	35,000	수련활동 요금에 반영

○ 종목별 초·중·고 월 회원 이상 요금표

(단위: 원)

골프약	견습장	수영장	야외운동장(풋살장)	
1개월	3개월	1개월(강습)	1시간당	수련활동시
119,000	339,000	85,000	35,000	수련활동 요금에 반영

3. 개인 사물함 이용료

O 종목별 요금표

(단위: 원)

구 분	골프연습장	수 영 장
월 사용료	10,000	5,000

O 사물함 이용수칙

- 개인 사물함은 탈회(휴회 포함) 기간 동안, 사물함 미사용을 아르피나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계속 부과 또는 임의 처분 된다.
- 회원기간 종료 시 사물함은 반납하여야 하며, 방치된 개인물품은 임의 처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※ 골프연습장 사물함은 일 단위 등록 및 휴회에 따른 일수 정산 할 수 있다. 수영장 사물함은 월 단위 등록으로 탈회 시 잔여기간 반환금은 없다.

4. 할인요금

○ 투숙객 할인요금표

(단위: 원)

구 분	자유수영	골프(70분)
성인	5,000	13,000
초, 중, 고	4,000	10,000
유아	3,500	-

O 할인 대상

국가유공자	다자녀가정 부모	다문화가정 부모		
10%	10%	10%		

- 다자녀 할인은 부산 시민 중 다자녀 3인 이상으로 자녀 중 한명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가능하다. (다자녀 기준은 아르피나 운영지침을 따른다.)
- 월회원에 대하여 할인하며, 일일 입장은 감면이 불가하다.(종목 중복 할인 불가) ※ 단, 직원 할인의 경우 수영장 일일 입장이 가능하다.
- 임직원(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비속에 한함) 등 이용 시 30% 감면 ※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(본인)의 경우 30% 감면

O 기타 할인

- 야외운동장(풋살장) 대관시 아래의 경우 10~30% 이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. 가. (10% 할인)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예상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나. (20% 할인) 이용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예상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다. (30% 할인) 이용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예상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경우
- 할인 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행사를 유치하거나, 특별 할인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소관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

[별지 제3호 서식] 열쇠 제작의뢰서

열쇠 제작의뢰서

 제작구분 : 신규, 분실, 재교부, 여벌, 파손, 기타 사 용 처 : 제작수량 : 제작사유(6하원칙)
상기 사유로 키 제작을 의뢰합니다.
년 월 일
부서 :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4호 서식] 열쇠 불출관리대장

열쇠 불출관리대장

		실		위치	kov	불 출		반납			_	
연번	일시	실 번호	실명		key 일련번호	부서	인수자 (서명)	수량	일시	반납자 (서명)	수량	비고 수량
1												
2												
3												
4												
5												
6												
7												
8												
9												
10												
11												
12												
13												
14												
15												
16												
17												
18												
19												
20												

[별지 제5호 서식] 열쇠 무단복제금지 서약서

열쇠 무단복제금지 서약서

본인은 아르피나 직무를 수행키 위해 아래와 같은 열쇠를 관리하며 직무 외 무단복제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아 래

○관리열쇠 : 마스터키(MK) EA Key 일련번호()

○용도 :

년 월 일

서약자 소 속:

직 책:

주민번호 :

성 명: (서명)

[별지 제6호 서식] 쿠폰 지급 신청서

쿠폰 지급 신청서

아래와 같이 쿠폰 지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	(부서 :	, 성명 :)

쿠 폰 명	용도(사유)	쿠폰번호	신청매수	비고

20 . . .

첨부서류	

[별지 제7호 서식] 무료 이용권 수불대장

무료 이용권 수불대장

품 명			발행NO			~	()	
결 재		14 6) 0)	용도 및 쿠폰번호		수 불 관 리			수령자	
부장	계	년월일	ţo	五 关 十七	킨오	수입	지급	재고	수령자 및 날인

[별지 제8호 서식] 습득물 관리대장

습득물 관리대장

구분	일시	장소	품목	연락 유·무	습득자	비고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21						
22						
23						
24						
25						